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3.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3.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행복나눔과장)

○ **제출일자:** 2022. 3. 4.(금)

○ **회부일자:** 2022. 3. 4.(금)

○ **검토기간:** 2022. 3. 7.(월)~2021. 3. 11.(금)

2.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된 식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두류푸드마켓의 위탁운영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 재 지	규모 (면적, ㎡)	운영방식	직원수	비 고
두류푸드마켓	두류공원로 50길 23 (두류동)	지상 1층 (242.63)	민간위탁	5명 (전담, 복무 등)	2017. 8. 18. 개소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두류푸드마켓 시설관리 및 사업 수행(기부식품 모집·관리 및 제공 등)
- 기부식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 그 밖에 달서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등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2022. 7. 1. ~ 2027. 6. 30.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4.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6조 및 제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두류권역 6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지역주

민을 위한 기부식품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두류푸드마켓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두류푸드마켓은 2017년 7월 20일부터 기부식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기부 받은 식품 및 생필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존감 보호를 위해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푸드마켓은 전국적으로 12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대구광역시에 8개, 달서구에는 달서푸드마켓과 두류푸드마켓 2곳이 운영되고 있음.

○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푸드마켓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자문결과와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한국푸드뱅크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2020년 12월 기준)

구분	합계	광역푸드뱅크	푸드뱅크	푸드마켓
전국	457	17	311	129
대구	21	1	12	8
달서구	4		2	2

출처: 전국푸드뱅크 연간백서 2020

관계법령

□ 기부식품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